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81 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최민희·강선우·김영배

김 윤・김 현・박민규

박선원 • 이해민 • 정동영

정성호 · 조정식 · 한민수

허성무 · 허종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과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.

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, 과학기술정보통 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 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(안 제19조, 제26조 및 제29조 등)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본문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 능부"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 능부"로 한다.

제10조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"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부총리 및"을 "부총리,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2명을"을 "3명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"를 "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은 과학 및 기술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·조정한다.

제22조 중 "부총리의"를 "부총리,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"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

다.

제29조의 제목 "(과학기술정보통신부)"를 "(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을 "과학기술 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"으로, "방송·통신의 융합·진흥 및 전파관리, 정보통신산업, 우편·우편환 및 우편대체"를 "인공지능 진흥 및 산업, 통신·인공지능의 융합·진흥 및 전파관리, 정보통신산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둔다.
- ④ 우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
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29조	과학기술정보통신
제1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	인공지능부장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방송ㆍ	방송통신위원회 위
통신의 융합ㆍ진흥에 관한 사무(제29조제1항의	
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제외한다)	원장

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(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
과학기술정보통신부	통신인공지능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

-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부령으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에 개별 법률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,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그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·신고, 그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

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,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,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, 행정기관 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,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
직 등) ① ~ ④ (생 략)	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	5
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	
관과 차관(제34조제3항 및 제3	
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	
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	
부장을 포함한다)을 직접 보좌	
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	
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에는 그	
기관의 장, 차관(제29조제2항ㆍ	
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	
따라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u> ·행	<u>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</u>
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	
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)ㆍ차	
장・실장・국장 밑에 정책의	
기획, 계획의 입안, 연구·조사,	
심사·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	
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둘 수 있다. 다만, 과에 상	
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	
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	

- ⑥ ~ ⑩ (생 략)

 제7조(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)

 집 (생 략)
 - ② 차관(제29조제2항·제34조 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행정안전 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) 또는 차장(국무조정 실 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그 기관의 장 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・감독 하며,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 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 행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10조(정부위원)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, 부·처·청의 처 장·차관·청장·차장·실장· 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

⑥ ~ ⑩ (현행과 같음)
제7조(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)
① (현행과 같음)
②
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
<u>.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정부위원)

·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에 따라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u>·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.

제12조(국무회의) ① (생 략)

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,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19조(부총리) ① 국무총리가 특 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부총리 <u>2명을</u> 둔다.

- ② (생 략)
- ③ 부총리는
 기획재정부장관과

 교육부장관이
 각각 겸임한다.
- ④·⑤(생략)

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
제12조(국무회의) ① (현행과 같
흥)
②
부총리, 과학기술정보통신
- 총리 및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부총리) ①
<u>3명을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기획재정부장관,</u>
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
<u>신인공지능부장관이</u>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22조(국무총리의 직무대행) 국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,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<u>부총리의</u>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,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,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.
 - 1. 2. (생략)
 -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- 4. ~ 19. (생략)
 - ② · ③ (생 략)
- 제29조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① 제29조(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

	<u>⑥</u> 과학기술성보통신인공지능
	부장관은 과학 및 기술 정책에
	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
	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・조
	<u>정한다.</u>
제	22조(국무총리의 직무대행)
	<u>부총리,</u>
	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
	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
제	26조(행정각부) ①
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	3.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
	4. ~ 19. (현행과 같음)
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평가, 과학기술의 연구개발·협력·진흥, 과학기술인력 양성, 원자력 연구·개발·생산·이용, 국가정보화 기획·정보보호·정보문화, 방송·통신의 융합·진흥 및 전파관리, 정보통신산업, 우편·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형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

②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u>에 과학 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 장 1명을 두되, 본부장은 정무 직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느ㅂ) ① 기취기스키니트 기시
<u>능부)</u> ① <u>과학기술정보통신인</u>
<u> 공지능부장관</u>
<u>인공지능 진흥 및 산업,</u>
통신 • 인공지능의 융합 • 진흥
및 전파관리, 정보통신산업
② <u>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</u>
<u> </u>
<u>.</u>
③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
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
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
정청을 둔다.
<u>④ 우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</u>
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
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
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
 다.